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제정 2016.11.10

개정 2017.12.13

【 총 칙 】

제 1 장 통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근거법률)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조직 및 정책 등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 8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과 의무)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9 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 10 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 11 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제한)

제 12 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 13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14 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 15 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 16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 17 조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등)

제 18 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 19 조 (당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방법)

제 20 조 (안전조치의무)

제 2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 22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 23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제 24 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 25 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 26 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 27 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방법 등)

제 27 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부 칙 】

<별표 1>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총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클래시스(이하 '회사' 라 한다)의 업무상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말한다.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 4 조 (근거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조직 및 정책 등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7.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감독
 -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감독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 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게 관련업무 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 하여야 한다.
- ⑦ 제 6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대표이사
 - 2. 위 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명하는 임직원
- ③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심의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요구사항 심의
 -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부서간 업무조정
 -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과 의무)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이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③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 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④ 회사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회사 담당 부서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2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9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 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서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제 1 항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 3 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0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 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따라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⑤ 제 3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나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집일로부터 3 일 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제출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 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 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 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4.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방법

제 15 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자, 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6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제 1 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 지정,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3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4.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당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방법)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20 조 (안전조치의무)

-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시·관리 하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 ④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회사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 22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협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통지 및 제 2 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5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4 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 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 일 이내에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조치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조치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조치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5.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조치를 한 후에도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22 조 제 3 항에 따라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7 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 24 조 (개인정보의 열람)

-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받았을 경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회사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 4 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 4 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25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① 회사는 제 24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등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삭제를 요구 받은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포함한다)와 이의제기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6 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사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7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방법 등)

-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제 24 조에 따른 열람, 제 25 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 26 조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 28 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회사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12 월 13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별표 1>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방법

1. 사내 개인정보

정보제공처	수집목적	수집항목	수집방법	수집기간
근로(연봉) 계약서	인사,관리,급여 등 이용 세무법인, 회계법인, 기타정부유관기관 위탁	-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스카이프 ID, - 이메일(개인/회사) - 전화번호(사내/핸드폰) - 은행 계좌정보(급여지급)	서명	재직 및 퇴사 후 1개월까지

2. 사외 개인정보

정보제공처	수집목적	수집항목	수집방법	수집기간
사이트 Classys.co.kr	문의 / 고객상담	(필수정보)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병원명 ----- (선택정보) 회사명, 전화번호	게시판 문의	1년
사이트 Skederm.co.kr	회원제 서비스이용 / 본인확인 ----- 마케팅 활용	(필수정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 (선택정보) 휴대폰, 이메일, 쿠키정보	회원가입	회원탈퇴 후 5일까지